

날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RE: 고객번호: N/A

사건명 Jones v. City of Los Angeles, 사건번호 BC577267로, 로스앤젤레스 수도전력부(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LADWP")의 고객들이 LADWP의 하자 있는 신규 과금 시스템의 실행과 관련하여 과도한 청구를 받았거나 기타 LADWP의 태양광발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이하,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합의와 관련해 법원은, LADWP 데이터를 확인하고, 영향을 받은 계좌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기 위해 과금 시스템 독립 감시 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LADWP는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여 귀하께서 아래의 하위집단에 속하며 귀하에 대해 다음 금액이 초과 부과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Unrefunded Balance	\$
Overbilled	\$
Incorrect Fee	\$
Solar	\$

합의 집단 구성원으로서, 귀하는 초과 징수된 금액 및 초과 징수와 인과 관계를 가지는 기타 손해의 100%를 수령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계좌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하고자 하신다면, 이 편지를 받으신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Billing Settlement Claims Administrator P.O. Box 43449 Providence, Rhode Island 02940-3449의 클레임 관리자에게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상기 금액에 동의하시는 경우,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합의를 최종 승인한 이후 상기 금액이 입금 또는 환급될 것입니다.
- (2) LADWP로 인해 귀하에게 기타의 손해(상기 초과 징수 금액과 별도로)가 발생했다고 믿으시는 경우, 해당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액을 수령하기 위해, **귀하는 2017년 6월 5일 전의 소인이 찍힌 청구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6월 5일 이전에 청구양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구양식은 본 서한에 동봉되어 있으며, www.ladwpbillingsettlement.com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 양식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청구와 관련해 수령할 금액을 서한으로 통지해드릴 것입니다.

청구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30일 이내에 특별 전문가(Special Master)의 독립된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한에 서명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귀하의 LADWP가 결정한 합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진술을 기재하고, (ii) 해당 금액에 대한 불복 사유와 귀하가 정당하다고 믿는 금액 및 그 이유를 설명하고, (iii)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일체의 서류 사본을 첨부할 것. 집단 통지에 관한 우송편 지정(mailing directions)에 따라 귀하의 독립 검토 요청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3) **본 합의에 참가하지 않으시려면, 2017년 6월 5일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본 합의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경우, 귀하는 본 서한에서 지정한 금액의 수령을 포함해 일체의 합의 혜택에 대해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일체의 금액에 대한 청구 자격을 상실하고, 본 합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본 합의에서 결정된 청구권에 대해 스스로 또는 변호사를 통해 LADWP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합의에서 탈퇴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경우, 본 서한에 포함되어 있는 집단 통지(Class Notice)를 참고하거나 1-844-899-62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한이나 합의에 의거한 선택권(option)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1-844-899-6219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의 관리관